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\*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§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, 문화산업진흥기본법§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예 아니오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･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\* 을 지출했는지 여부 분 류 해당 여부 1)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비\*\* 2)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3) 일반 연구･인력개발비 \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･인력개발비 \*\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(유의사항)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(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)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&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･부품･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,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･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예 아니오 공제율 일반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.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 40%(30%＋α) 최대 40%(25%＋α) 최대 30%(20%＋α) \* α :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 2.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중견･대기업 최대 50%(40%＋α) 최대 40%(30%+α) \* α :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 3. 일반 연구･인력개발비(①, ② 중 큰 것) ① 증가분 방식\* 중소기업(유예기간 포함) 일반기업 50% 25%(중견기업 40%) \*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: (’15년 이후) 직전년도 ③ 당기분 방식 중소기업 (유예기간 포함) 중견기업 1∼3년차 중견기업 4∼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% 15% 10% 8% 0∼2\* % \* ’0%＋최대 2%{(R&D비용/수입금액)×1/2} 예 아니오